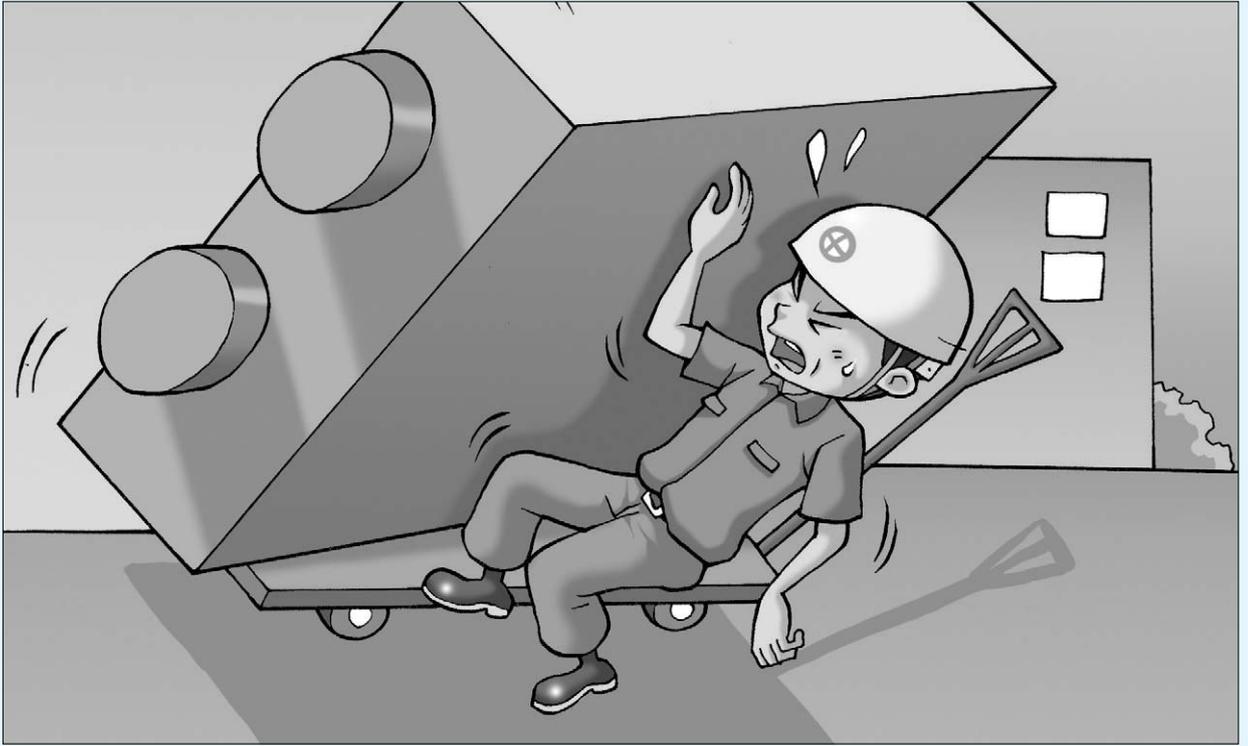


# 핸드팔레트로 자재운반 중 전도



## 1. 재해발생경위

2006년 6월 ○일 11:20경 충남 소재 ○○화력 회처리 설비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열교환 설비(무게 : 1.55Ton)를 설치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핸드 팔레트(비동력식)에 적치 후 창고 출입문 밖의 약 4% 정도의 경사진 곳으로 이동 중, 열교환 설비가 균형을 잃고 피재자 방향으로 전도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.

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중량물 운반시 지게차 미사용
- 나. 작업계획서 미 작성
- 다. 근로자 교육 미실시

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중량물 운전시 지게차 사용



# 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

열교환설비(무게 : 1.55ton)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작업장소의 경사 및 자재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.

## 나. 작업계획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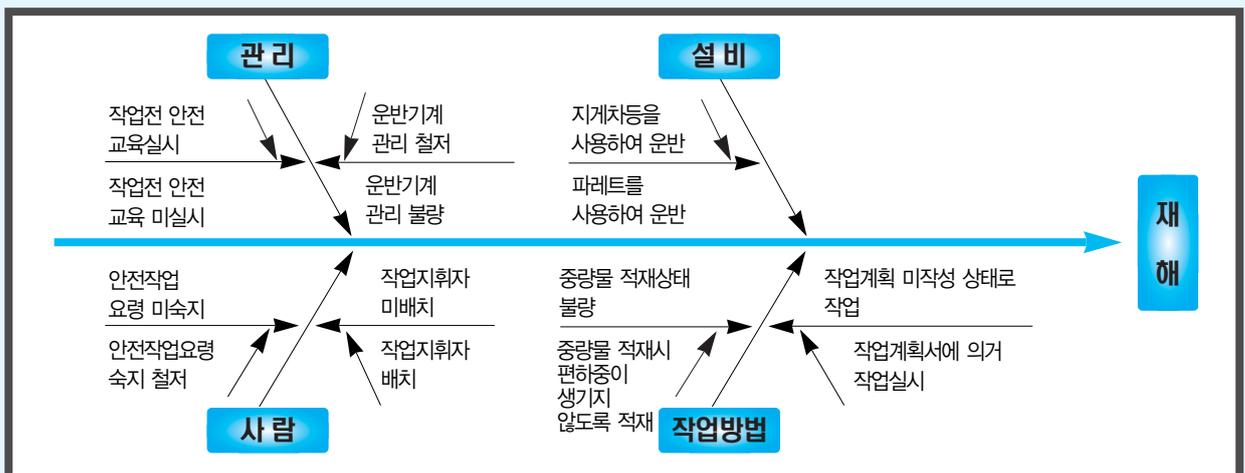
당해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,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
## 다. 근로자 교육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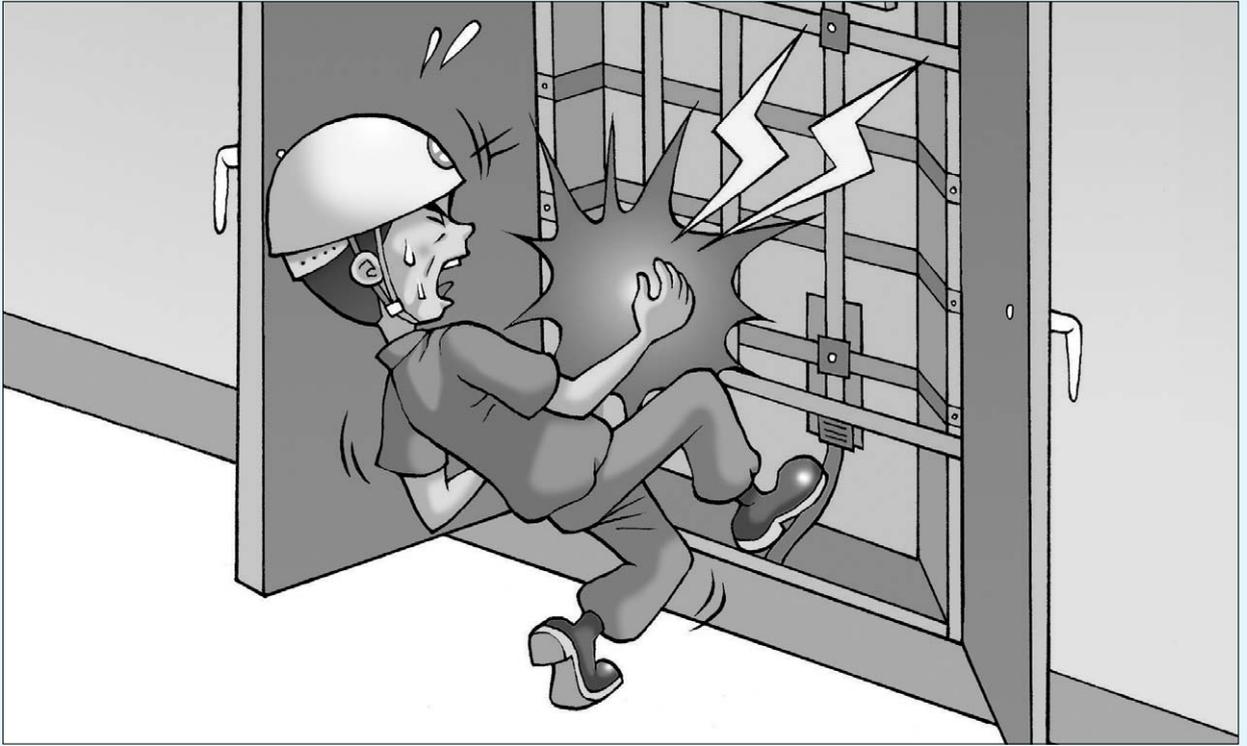
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재해예방토록 해야 함.

## 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#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중 6.6kV 충전부에 접촉



## 1. 재해발생경위

2006년 5월 ○일 14:50경 경남 소재 ○○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 건물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공장의 주 변전실 내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인접한 6.6kV 충전부(부스바)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.

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충전전로에 방호조치 미흡
- 나.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
- 다.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

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충전전로에 방호구 설치
-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함.



# 재해사례연구 감전사고

## 나. 절연용 보호구 착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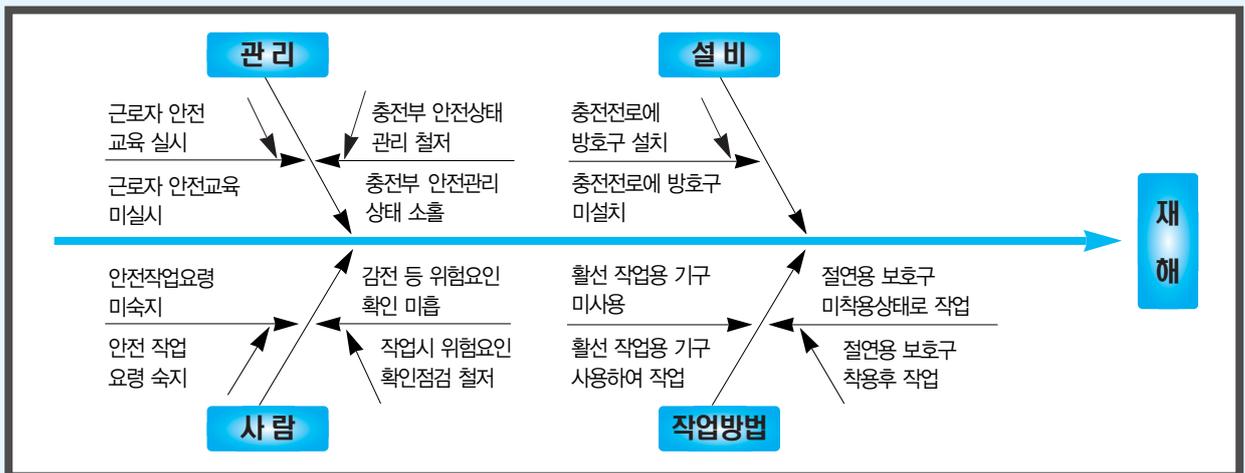
동일한 배전반 내에서 활선부위와 정전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라도 모든 활선부위가 완전하게 방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장갑,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보호구 착용 후 작업함.

## 다. 근로자 안전교육실시

감전방지를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.

## 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# 박리제 공 드럼통 산소용단 작업중 폭발



## 1. 재해발생경위

2006년 6월 ○일 14:00경 전북 소재 ○○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해자가 박리제로 사용하고 남은 공 드럼통을 자재 정리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소 용단 작업 중 드럼통이 열에 의해 팽창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.

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인화성 물질 잔존 여부 미확인
- 나. 드럼통 내부 세척 미실시
- 다. 안전의식 결여

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작업전 인화성 물질 잔존 여부 확인

인화성 물질을 취급했던 용기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드럼내부에 인화성 잔류가스



# 재해사례연구 폭발사고

에 의한 폭발위험이 상존하므로 절단작업전에 물 등으로 내부를 충분히 세척한 후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철저.

### 나. 페드럼통 관리 철저

사용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페드럼을 용접·용단 등을 통해 개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한 기성품을 사용.

### 다. 안전의식 고취

작업시작전 당해 작업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재해예방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.

## 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